

건의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업의 기술혁신과 상품의 국제 경쟁력제고는 물론,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진력하고 계신 상공자원부장관님께 우리 서산군의회 10명의 의원은 9만여 군민과 더불어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읍인 대산은 서해안개발의 중심지로서 대단위 임해공단(삼성종합화학단지, 현대석유화학단지)이 조성되면서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 될것을 예상하고 우리 군민 모두는 부푼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만, 삼성종합화학단지, 현대석유화학단지, 현대정유등 3사 준공이후, 이들 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입주되지 않아 지역의 개발은 둔화되고 지역경제는 침체되어 부푼 기대와는 달리 허탈감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이 입주되지 않는데는 이곳의 높은 땅값과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등에도 원인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그간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었던 제반 사항을 해소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서산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보 양보하는 입장에서 기업을 유치하되 지역주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간 삼성에서는 승용차 생산을 위한 공장입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본군 대신읍 소재 삼성종합화학공장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충남도 공영개발예정지)을 연결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면 인근 해역이 항로로 지정 고시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대형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중공대륙 및 유럽시장을

겨냥한 승용차 생산 공장입지로는 최적지가 될 것입니다.

지역민 모두가 자동차 공장이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침언하오니, 저희 지역의 입지여건을 면밀히 검토, 공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산군의회 10명의 의원은 9만여 군민과 함께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부의 무궁한 발전과 상공자원부장관님의 전승하심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0월 21일

서산군의회	의	장
	부	의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서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하 "특별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 2 장 금고운영

제3조(용자대상사업) 용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의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 가. 경제작물 :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 나. 잡업 : 잠실건립, 상전조성
 - 다. 축산 : 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등
 - 라. 수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등
 - 마. 양묘
 - 바. 꿀벌
 - 사.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 가. 농지조성(개답) 나. 마을농장
- 다. 초지조성
- 라.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 마. 구판장 바. 기타 생산기반조성

3. 특별지원

- 가. 마을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제4조(용자대상) ① 용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3. 잘 살아보지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4.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② 군수가 제1항의 용자대상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용자한도 및 이율) ① 용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안으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용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용자금의 대부이율은 년 3%안으로 한다.

제6조(대부기간) ① 용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거치 2년이내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거치 3년이내
3. 장기성 사업자금 - 3~5년거치 3년이내 상환

②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단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1년 이내의 사업
- 2. 중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2년이상 3년이내의 사업
- 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3년이상 10년이내의 사업

제7조(용자금 대부신청) ① 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리 개발위원중에서 5명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신청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담보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용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용자의 대출목적의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용자금 상환) ① 이 용자금은 대부기간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용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9조(감독) 군수는 자금의 용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특별지원사업

제10조(용자대상 마을) ① 용자대상마을은 군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기용자받은 마을제외)하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 2.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 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② 군수가 사업대상마을을 선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자대상사업) ① 용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다만, 마을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용자한도 및 이율) ① 용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안으로 한다.

② 용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13조(대부기간) 용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용자금 대부신청) ① 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명의(가구의 경우 개인명의)의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연대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③ 본 융자금의 경우에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년 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 30, 12. 31)로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협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군수는 상환기간 경과 1월, 2월 및 3월후 각각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 ①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

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 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된 자금은 주민소득증대 사업자금으로 융자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

⑤ 본조 각항에서 규정은 사항이외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기간, 융자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제19조(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①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 정착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 학생의 보호자명의로 특별지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의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운용규정(내무부장관 훈령 제941호)에 의한다.

제20조(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

① 화훼기술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업교육협회 회장단이 추천한 농업계 고등학교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의 화훼기술배양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교당 1,000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업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화해 기술 육성특별지원금운용규정(내무부 훈령 제777호)에 의한다.

제21조(1면 1특화 사업자금 융자특례) ① 농촌 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등을 지역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면 1특화 사업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1면 1특화 사업 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 지원사업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면당 45백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연리 3%, 3년거치 5년균등 상환으로 한다.

⑤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수시 지도 감독하고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특별회계의 설치

제23조(설치)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4조(세입, 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성금) 자금 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새마을 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2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 5 장 보 칙

제27조(융자금의 대출) 군수는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28조(중복 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29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30조(체납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경과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봉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서 산 군 수 귀하

서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증개정조례안

서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22조 제3호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조 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을 각각 “60”일로 한다.

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